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52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박성준 · 허 영 · 박상혁
허종식 · 박찬대 · 김용만
김영호 · 전용기 · 최혁진
김우영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되어 자격 재교부가 가능한 실정으로, 자격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놀봄교실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취업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교부 하는

단계에서도 이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자격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을 지방자치 단체가 맡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놀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 16조 및 제48조 등).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20년)”을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20년이”를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10년이”를 “1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한다.

제20조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을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확정된 날부터 20년이”를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과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정보의 관리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아니한 사람	<u>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 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 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u>10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 ----- ----- ----- ----- ----- ----- -----10 <u>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u> ----- ---
9. (생 략)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 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9. (현행과 같음) 제20조(결격사유)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 과되지 <u>아니한 자</u>	3. ----- ----- ----- ----- <u>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사 유를 충족하지 아니한 자</u>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 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생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 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현행과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1. (생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없다)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정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서 교육부령으

<신 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
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로 정하는 기간이-----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자
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취
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
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
고 인정되고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자격을 재교부
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

-----제2호, 제2호
의2-----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48조에 따른 자
격취소 및 제23조의3에 따른

3. ~ 5. (생략) ②·③ (생략)	<u>교육명령과 이와 관련한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u> <u>의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u> <u>정보의 관리 지원</u>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